

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9. 10. 2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9년 9월 19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19년 9월 24일

라. 상정일자: 제2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19. 9. 27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장종연)

가. 제안이유

- (재)영등포문화재단의 관리시설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, 구립정보도서관,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비롯하여 청소년 대상 사업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재단 사업범위에 '청소년 문화 활동 진흥' 조항 삽입으로 재단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구립 도서관 운영 관리 조항 추가(안 제4조제1항제2호)
- 청소년시설 운영 관리 및 청소년 문화 활동 진흥과 교류사업 신설
(안 제4조제1항제3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임경태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문화 환경과 증가하는 지역문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예술분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재단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
- 주요내용으로는,
 - 안 제5조에서 재단의 사업에 청소년시설 운영 관리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과 교류 사업을 추가 명시함.
- 검토결과,
 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의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설관리 차원이 아닌 우리구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을 통해 청소년이 다양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증진과 문화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,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44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19. 9. .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(재)영등포문화재단의 관리시설을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,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비롯하여 청소년 대상 사업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재단 사업범위에 청소년시설 운영 관리 및 청소년문화활동 진흥 관련 조항 삽입으로 재단의 사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구립 도서관 운영 관리 조항 추가(안 제4조제1항제2호)
- 나. 청소년시설 운영 관리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과 교류사업 신설
(안 제4조제1항제3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청소년 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(2019. 7. 25. ~ 8. 14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중 “대림 정보문화도서관, 문래 정보문화도서관, 선유 정보문화도서관 운영 관리”를 “대림, 문래 정보문화도서관 등 구립 도서관 운영 관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청소년시설 운영 관리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과 교류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재단의 사업)</p> <p>①(생략)</p> <p>1.(생략)</p> <p>2. 영등포구민회관 및 <u>대립 정보문화도서관, 문래 정보문화도서관, 선유 정보문화도서관 운영 관리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3.(생략)</p> <p>4.(생략)</p> <p>5.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4조(재단의 사업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영등포구민회관 및 <u>대립, 문래 정보문화도서관 등 구립 도서관 운영 관리</u></p> <p>3. <u>청소년시설 운영 관리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과 교류 사업</u></p> <p>4.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5.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6.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